단시간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화원재가장기요양기관(이하 "갑"이라 함)과 _____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2020년 월 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계약기간 만료 후 서비스 중일 시에는 당연 갱신으로 간주함 (서명 또는 날인

2. 근무장소 : 방문요양(목욕)계약자 자택 및 "갑"이 지정하는 장소
"갑"을 필요한 경우 "을"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3. 업무내용 : 노인장기요양법 및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업무 또는 목욕업무
(신체활동,인지활동,정서지원,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등의 업무)

4.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갑"의 월 급여제공 시간표(일정표)로 가름한다)

	근무시간	휴게시간
주6일		
비 고		

(8) "을"은 본 계약서에 의한 경우와 "갑"이 요구하는 경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함에 동의한다. _____ (서명 또는 날인)

5. 근무일/휴일
(1) 근무일 : 매주 5 일 근무
(2) 주휴일 : 매주 일요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일을 별도로 부여하지 아니함)

6. 임금
(1) 시간급 : 8,590 원 (계속근로 중 최저임금변동에 따라 최저임금에 맞게 변동됨)
(2) 기타급여(제 수당 등) :
처우개선비(계속근로 중 처우개선비 변동에 따라 변동됨), 장기근속, 상여금 등(규정에 준하여)
(3) 법정수당(할증임금 적용) :
① 연장수당 :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시간급에 50%를 가산
② 휴일수당 : 휴일(주휴일 포함)에 근무를 하는 경우 시간급에 50%를 가산
③ 야간수당 : 22:00에서 06:00 사이에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시간급에 50%를 가산
(4) 임금지급일 : 익월 25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5) 지급방법 : 법정 제세금을 공제한 한 후 을에게 직접지급( ), 예금통장에 입금(○)
(6) 본인부담금 공제 : 가족요양 제공시 본인부담금은 급여에서 공제함에 동의한다. (본인 의사에 반함)
_____ (서명 또는 날인)

7. 준수사항
(1) "갑"이 정당한 사유로 모임을 요청하는 경우 "을"은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서비스제공기록지 제출, 교육, 회의, 간담회 등)
(2) "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규율에 따라 RFID에 입력하거나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을"은 서비스 이용자의 특이사항(서비스시간 변경, 신체적·정신적 상황, 병원입원, 시설입소 등)이 있을 시 "갑"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8. 불공정행위 요구 금지와 거부 권리

(1) "갑"은 본인부담금 면제, 수급자 빼내오기 등 불공정행위를 "을"에게 강요하거나 유도하지 아니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입법취지를 성실히 준수한다.

(2) "갑"이 8. (1)의 불공정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을"은 이를 거절할 권리가 있고, "갑"은 "을"의 거절행위에 대해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9. 고충처리

"을"의 고충사유 발생시 "갑"은 법적 기준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절한 고충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하며, "을"은 아래 10.의 사유일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않는다.

10. 계약해지

"갑"은 아래의 사유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한 경우 "을"에게 통지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속 3일 이상 결근하거나 지각·조퇴, 근무지 이탈로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2)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및 고의·중대한 과실로 중대한 사고나 손실을 야기시킨 경우

(3) 신체·정신상 장애로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방문서비스계약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을"의 서비스를 거부하여 교체가 된 경우

(5) 기타 "을"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때

11. 비밀유지의무 및 손해배상

"을"은 근무 중 알게 된 "갑"의 정보 및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여 "갑"에게 금전적·정신적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12. 기타

(1)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취업규칙 등 "갑"의 제규정에서 정한 바에 에 의하며, "을"은 취업규칙 등 "갑"의 제규정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다.

(2) "을"은 퇴사 시 인수인계 등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15일 전에 "갑"에게 통보한다.

(3) "을"은 "갑"으로부터 이 계약서 내용을 충분히 설명 듣고, 내용을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

(4)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5)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였고 "갑"으로부터 1부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

2020 년 월 일

(갑) 사업체명 : 화원재가장기요양기관

주 소 :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0, 3층

대 표 자 : 우 춘 순 (서명 또는 날인)

(을)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